#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27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정혜경·전종덕·박홍배

민형배 • 윤종오 • 김태선

이학영 · 이재강 · 김남근

강득구 · 한창민 의원

(119]

## 제안이유

현행법상 예술인과 방과 후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가이 드 등 일부직종이 '노무제공자'의 명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번역가, 웹 디자이너, 유트브 편집자 등은 여전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명실상부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되려면 고용계약 외 다른 형식의 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나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프리랜서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

업 시 급여지원 등을 위하여 부분실업급여·소득지원급여·이직준비급여·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등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1)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을 70세(농림어업인은 75세)로 상향함으로써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함(안 제10조).
- 2) 농림어업 영세사업자도 자영업자에 포함하여 고용보험 당연가입자로 함(안 제10조, 제13조제2항제1호).
- 3)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
- 4)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등과 타인을 사용하지 아 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영업자, 프리 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프리

랜서를 사업장가입대상으로 하면서 신고 등 편의를 위하여, 고용 보험위원회가 신고의무업종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77조의2 및 제 77조의5).

- 나.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 지원 등
  - 1) 여러 직장에 다니더라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라도 일을 잃어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소득감소분에 대해 부분실업 급여를 도입함(안 제40조제1항제2호).
  -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 업자인 피보험자가 재난 등의 사유로 소득이 최저임금액의 100분 의 80 미만인 경우 소득지원 급여를 지급함(안 제59조의2 신설).
  - 3)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회 90일을 한도로 하여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함(안 제59조의3 신설).
  - 4) 피보험기간이 12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직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총 600일을 한도로 하는 청년이 직급여를 지급함(안 제59조의4 신설).
  - 5)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기간이 8년이지난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8년마다 1회 90일을 한도로 하는 재충전급여를 지급함(안 제59조의5 신설).

6) 자영업은 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계절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피보험 단위기간을 지금과 같이 1년으로 두고, 기준기 간만 현재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려 급여대상을 넓힘(안 제69조 의3제1호).

## 다. 일 · 가정 균형 지원 강화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서 120일 이상인 피보험자로 완화하고,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사업을 중단한 경우 중단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안 제70조제1항).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2) 에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출산·유산·사산한 경우와 배우자가 출산하여 임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이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 3)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함(안 제76조의3 신설).
- 4)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지급함(안 제76조 의4 신설).

5)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함(안 제76조의5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4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를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인 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을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급여의 지급, 제76조의4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급여의 지급 및 제76조의5에 따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를 "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49조의4"로 하며, 같은 항단서 중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을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

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지급, 제76조의4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급여의 지급 및 제76조의5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보장수준 향상, 연대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예술인등 및 노무제공자"로 한다.

다만, 제4호의2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다.

4의2. 이 법에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예술인"을 "따른 예술인등"으로,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를 "예술인등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한다.

다만, 별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의 연령 기준은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6의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7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이하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농림어업인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해의 12월 31일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7제5항·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한다.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인적 용역 또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중 제1항을 준용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 가 있는 업종(이하 "신고의무업종"이라 한다)을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업종 지정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및 피보험자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그 사업에 노무 또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어떠한 종류의 피보험자인지확인하기 어려운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의 종류에 관한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그 중 한 사업의"를 "각 사업에 관하여 모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고용조정"을 "고용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전단 중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을 "근로자에 대한 휴업ㆍ휴직, 예술인 등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계약갱신 ·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 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 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를 "휴업이나 휴직, 계약유지 •연장 등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 술인등, 노무제공자의 보수가"로, "그 근로자"를 "그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 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 치"를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를 고용 하거나 노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 자"를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3조 중 "근로자"를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노무제공자

제37조제1항 중 "구직급여"를 "구직등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직등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직급여
- 2. 이직준비급여
- 3. 재충전급여
- 4. 소득지워급여

제4장제2절의 제목 "구직급여"를 "구직등급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180일"을 "120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90일"을 "60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8개월"을 각각 "36개월"로,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의2. 소정근로시간이 1일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기준기간 동안 평균 주 4일 이하 근로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다음 각 목 이상일 것

가. 주 4일 근로한 경우: 96일

나. 주 3일 근로한 경우: 72일

다. 주 2일 근로한 경우: 48일

라. 주 1일 근로한 경우: 24일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 다)하지 못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에 취업했다가 일부 실업한 경우 로서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사업 별 평균임금 합산액이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미만 일 것

제41조제1항 단서 중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을 "피보험자격 각각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이직한 사업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직한 사업의 보수로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이직한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를 "이직한 사업의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이직 전 1일소정근로시간"을 "이직 전 사업의 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기초일액으로 한다"를 "이직한 사업의 기초일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초일액으로 한다"를 "이직한 사업의 기초일액으로 한다"로 하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급자격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수입과 구직급여일액을 합한 액수는 최저임금액을 넘을 수 없다.

제47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0조제1항 중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피보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 1. 근로자인 피보험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 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의 존속기간
- 3. 농림어업인인 피보험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을 시작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한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4.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 해당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제55조의2제2항 중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등 혼인의 실질을 가진 합의에 따른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8조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소득지원급여) ① 제40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재 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43조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시간 단 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 된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상당액까지 소득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4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2항의 이직일은 소득감소기준일로 본다.
- ③ 소득지원급여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3(이직준비급여) ①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회 90일을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이하"이직준비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급여기간 만료 후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야다시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1일 180일을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이하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은 자는급여기간 만료 후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제59조의4(청년 이직준비급여) ① 피보험기간이 12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총 600일을 한도로 하는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② 피보험기간이 12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 자영업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동 안 자영업 청년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한다.
- 제59조의5(재충전급여) ①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기간이 8년이 지난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8년마다 1회 90일을 한도로 하는 재충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농림어업인인 피보험자도 또한 같다.
  -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재충전급여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재충 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휴직을 피보험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 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충전급여청구권은 8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재충전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이하 "최저재 충전급여일액"이라 한다)
- 3. 농림어업인의 경우에는 그 기초일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 액
-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재충전급여일액이 최저재충전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재충전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재충전급여일액으로 한다.
- ⑥ 피보험자가 제1항의 재충전급여를 지급받는 중에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단한다.
- 제69조의2의 제목 중 "자영업자"를 "자영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제3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3항 각 호
- 2. 농림어업인인 피보험자: 제37조제2항1호·제2호·제3호 및 제3항 각 호
- 3.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 종사하는 사업이 농림어업인 경우에는 제2호에, 그 밖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제69조의3제1호 중 "24개월간"을 "48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둘이상의 사업에 취업했다가 일부 실업한 경우로서 소득총액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80 미만일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다만, 농림어업인의 경우 일부 실업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를 "과세소득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농림어업에 종사한 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출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는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의7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0조제1항 중 "180일"을 "12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

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또는 임신 중 인 여성으로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사업을 중단한 경우 중단일 이전에 각 제69조의3제1호, 제77조의3제 1항제1호, 제77조의8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 1. 근로자인 피보험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

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100분 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년이되는 날까지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73조제2항 중 "제70조제3항"을 "제70조제4항"으로, "그 취업한 기간"을 "그 취업으로 얻은 소득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인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70조제3항"을 "제70조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180일"을 "1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제77조의8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180일"을 "1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 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를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유산·사산한 경우 및 배우자가 출산하여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이 끝난 날 이전에 각 제69조 의3제1호, 제77조의3제1항제1호, 제77조의8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 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출산휴가급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하여 기초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1. 출산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유산·사산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기간
- 2. 배우자 출산 시 최초 10일

제76조의3부터 제7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가족돌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 봄휴직(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 등 혼인의 실질을 가진 합의에 따른 밀접한 정서적·생활공동체적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30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2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다만, 피보험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의 요건에해당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가족돌봄휴직을 부여받지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동안 가족돌봄휴직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가족돌봄을 위하여 연간 90일의 범위에서 노무제공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이전에 각 제69조의3제1호, 제77조의3제1항제1호, 제77조의8제1항제1호의 피보 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

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피보험자가 제3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급여액은 제70조제5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액에 준한다.
- ⑥ 가족돌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제76조의4(가족돌봄휴가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20일 이상인 경우가족돌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제1항의 기간 동안 가족돌봄을 위하여 연간 10일(감염병 확산 및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10일,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15일 연장할수 있다) 이내로 노무제공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각 제69조의3제1호, 제77조의3제1항제1호, 제77조의8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가족돌봄휴가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제76조의5(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2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

- 람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제77조의8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 ④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제76조의6(준용) ① 가족돌봄휴직 급여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가족돌봄휴직 급여"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가족돌봄휴직"으로 본다.
  - ② 가족돌봄휴가 급여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제73조 및 제7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가족돌봄휴가 급여"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가족돌봄휴가"로, 제75조의2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가족돌봄휴가 급여"로 본다.
  - ③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가족돌봄 등을위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제77조의2의 제목 중 "예술인인"을 "예술인등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주와 예술인등"을 "사업주 등과 예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예술인등과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으로 하다.

- 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문화·예술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 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예술인등"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 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2.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 서

제77조의3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인"을 각각 "예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기예술인" 을 "단기예술인등(예술인등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제4호 중 "예술인"을 각각 "예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단기예술인"을 "단기예 술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예술인"을 각각 "예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 외한다)의"를 "예술인등의"로. "예술인의"를 "예술인등의"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인"을 각각 "예 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기예술인"을 "단기예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한다.

제77조의4를 삭제한다.

제77조의5제1항 전단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제15조"를 "제15조(제8항에 따른 신고의무업종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 개시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예

술인"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예술인등과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예술인등 과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예술등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예술등플랫폼사업자"라한다)와 예술등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예술등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등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자료제공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77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은 "예술등플랫폼사업자"로 본다.

제77조의6제1항 중 "근로자가 아니면서"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으로 하며, 같은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7조의7제1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제15조제8항에 따른 신고의무업종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기노무제공자"를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인"을 "예술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를 "노무제공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9를 삭제한다.

제77조의10제1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5조(제8항에 따른 신고의무업종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87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을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과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처분"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처분"으로 한다.

제105조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술인등·노무제공자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4호 중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 1.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술인등 및 노무제공 자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그 밖에 근로자, 예술인등 및 노무제공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제118조제1항제4호 중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108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108조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109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109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108조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109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7조(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87조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1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가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이하"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	
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u>예술</u>	예술
인 또는 노무제공자	<u>인등</u>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나
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	
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u>자영</u>	<u></u> 자영
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	업자(무급가족종사자인 피
보험자"라 한다)	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u>한다)</u>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 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 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 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 런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 다.

3. ~ 6. (생략)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 ② (생략)

제6조(보험료) ① (생 략)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 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 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 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

2	
	예술인등
	문화예술용역
· 3. ~ 6. (현행 <sup>3</sup>	과 간은)
0. 0. (년 8년 제4조(고용보험시	, — , .
	日/ ①
^ .	
·	l,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가족될	불봄휴직 급여 등
② (현행과 같	
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u>제75조·제76조의2</u>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
봄휴직 급여의 지급, 제76조의4
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급여의
지급 및 제76조의5에 따른 가
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
축 급여 지급
③
<u>각 고용</u>
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ㆍ
제49조의4
<u>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u>
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

수 있다.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 신설>
- 1. 보험제도 및 <u>보험사업의 개</u> 선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신 설>

- 5. (생략)
- ③ (생략)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 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제76조의4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급여의 지 급 및 제76조의5에 따른 가족 돌봄휴가 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1. ----<u>보험사업의 개</u> 선에 관한 사항(보장수준 향 상, 연대성 제고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이 법에서 고용보험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5.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4) -----

- 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2. ~ 4. (생략)
- ⑤・⑥ (생 략)
-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 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 다)에 적용한다. <u>다만, 산업별</u>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 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
-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다.

· 1. 근로자, 예술인등 및 노무제
공자
2. ~ 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적용 범위) ①
다만, 별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
산활동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따른 예술인등
예술인등 또는 노무제공자
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한다.

- 1. (생략)
-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 3. ~ 5. (생략)
-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u>예술</u> 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 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 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u>문화예</u> 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 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1.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3. ~ 5. (현행과 같음)
② <u>70세</u> <u>70세</u>
<u>70세</u>
<u>다만, 본문의 연령 기</u>
준은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
하여는 75세로 한다.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 <u>예술</u>
<u>인등</u>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
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
<u>술용역 등 계약</u>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생 략)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 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현행과 같음)

-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 하여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 조의6의 농림어업인(이하 "농 림어업인"이라 한다)은 이 법 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 한 것으로 본다.
-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배우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 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7에 따 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이 하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 자"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 제49조의7제1항 및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생 략)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 험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 ⑥ (생 략)

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 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 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 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사람에 대하여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농림어업인은 보험관계가 소 멸한 해의 12월 31일에 피보 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 다.
- 2.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7제5항 •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 실한다.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 <u>설></u>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생 략)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 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 실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한 다.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인적 용역 또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 업 중 제1항을 준용하여 신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종(이 하 "신고의무업종"이라 한다)을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 • 의결 을 거쳐 지정・고시하여야 하 며, 신고의무업종 지정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현행과 같음)
  - ② 사업주는 그 사업에 노무 또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 가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 자, 자영업자 중 어떠한 종류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 험자의 종류에 관한 확인을 청 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u>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u> 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 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 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

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는	제2호	}				
			_	피보험			
	득			여부			
		1 0	<u> </u>				
	<u>4</u>				저	] 2 お -	
	<u></u>				<u></u>	<u> </u>	
1				과 시		•	マヽ
서		. ,		격의		<u></u> 극기	군)
	1						
	<u>사</u>	업에 3	<u> 관하여</u>	모두			
			·				
	<스	<u> </u>	<u>&gt;</u>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 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 1. 일용근로자
-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 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 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 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다.
-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 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③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 험자격 모두를 취득한다.

4		예
술(	인등	
제212	조( <u>고용조정 등</u> 의 지원) ①	_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 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 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 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 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 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근로자
에 대한 휴업ㆍ휴직, 예술인 등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계약갱
<u>신·연장</u> ,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
한 조치
지 · 연장 등 고용안정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술인등, 노
무제공자의 보수가
그 근로자, 예술인등,
<u> </u>
<u></u>
· ②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근로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 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 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 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 는 사업주 또는 <u>근로자</u>에게 우 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 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를 고	_
	용하거나 노무를 제공받기로	_
	하는 등 근로자, 예술인등, 노	=
	무제공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	- -
	<u> 안정을 위한 조치</u>	-
		-
		-
	3	-
		-
		-
		-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
	<u>.</u>	
제	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	
	원)	-
		-
		-
		-
		-
		-
		-
		-
		-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	
		-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지원)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 다.

1. ~ 6 (생 략) <신 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 급여는 <u>구직급여</u>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u><신 설></u>

② (생 략)제2절 구직급여

공자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2
1. ~ 6 (현행과 같음)
<u>7. 노무제공자</u>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u>구직등급여</u>
② 구직등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1. 구직급여</u>
2. 이직준비급여
3. 재충전급여
4. 소득지원급여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절 구직등급여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지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 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 80일 이상일 것

<신 설>

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1
- <u>120일</u>
1의2. 소정근로시간이 1일 60시
<u>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으</u>
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기준
기간 동안 평균 주 4일 이하
근로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다음 각 목
이상일 것
<u>가. 주 4일 근로한 경우: 96</u>
<u>일</u>
<u>나. 주 3일 근로한 경우: 72</u>
<u>일</u>
다. 주 2일 근로한 경우: 48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상태에 있을 것

- 3. ~ 5. (생략)
-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u>18</u> 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

_	<u>일</u>				
라.	주	1일	근로한	경우:	24
(	<u>일</u>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에 취업했다가 일부 실업한 경우로서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사업별 평균임금 합산액이 시간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
- 3. ~ 5. (현행과 같음)

6.	 	 		 	 	 	 	
-	 	 		 	 	 	 	
-	 	 		 	 	 	 	
-	 	 		 	 	 	 	
-	 	 		 	 	 	 	
-	 	 		 	 	 	 	
-	 	 - <u>60</u>	)일	 	 	 	 	
_	 	 		 	 _			

② -----<u>36</u> 개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 1. 이직일 이전 <u>18개월</u>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u>18개월</u>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u>3년</u>을 초과할 때에는 <u>3</u>년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24개월
  -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
     을 것
  -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 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 였을 것

1	-36개월
	<u>36개월</u>
<u>5년</u>	<u>5년</u> -
<u>&lt;삭 제&gt;</u>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 근로
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
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	다. 다
만, <u>자영업자인</u> 피보험자	-의 피
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	<u>:</u>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
기간으로 한다.	

# ② (생략)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 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

ll 41조(피보험 단위기간) (1)
<u>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u>
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의 피보
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
② (현행과 같음)
③
<u>예술인등</u>
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
예술인등

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 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 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 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 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각각을	. — — — — - -	

<삭 제>

것으로 본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제 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 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 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 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 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 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 <u>「근로기준법」에 따른 그</u>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일액) ①	1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①
반은 보수를 기초로 「근로기 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반은 보수를 기초로 「근로기 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반은 보수를 기초로 「근로기 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반은 보수를 기초로 「근로기 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이직한 사업으로부터
<u>라 산정된 평균임금</u>	받은 보수를 기초로 「근로기
	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
사업의 보수로서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 총액 	라 산정된 평균임금
사업의 보수로서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 총액 	
사업의 보수로서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 총액 	
사업의 보수로서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 총액 	
사업의 보수로서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 총액 	
사업의 보수로서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 총액 	
사업의 보수로서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 총액 	
게 지급된 임금 총액	
② <u>이직한 사업과 관련하여</u>	<u>게 지급된 임금 총액</u>
② <u>이직한 사업과 관련하여</u>	
② <u>이직한 사업과 관련하여</u>	
이직한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 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u>기준보</u> 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 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 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 급자격자의 <u>이직 전 1일 소정</u>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

로자의 통상임금
·.
3
<u>이</u> 직
된 기사사 기조미스로 기급시
한 사업의 기준보수를 기초일
<u> </u>
<u> 액으로</u>
<u> 액으로</u>
<u> 액으로</u>
<u> 액으로</u>
<u>액으로</u>
액으로

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u>기초</u> 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② (생 략)

<신 설>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 수급자격 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 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

이직한 사업의 기초일액으로
<u>한다</u>
⑤
<u>이직한 사업의 기초일</u>
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자격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수입과 구직급여일액을 합한
액수는 최저임금액을 넘을 수
없다.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

간"이라 한다) 중에 <u>고용노동</u>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제49조(대기기간) ① (생 략)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 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보수
를 받는 등 고용노동부렁으로
<u>정하는 기준</u>
<u>.</u>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과 같
<u></u> 수
2
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
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키기이그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u>피</u>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생 략)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 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 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 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 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 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 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ス	급	하	じ	L
$\sim$	日	Ϋ́		Г.

세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
기간) ①		
피보험기간		

- ② (현행과 같음)
- ③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기간으로 한다.
- 1. 근로자인 피보험자: 그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그 수 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의 존속기간
- 3. 농림어업인인 피보험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 의 적용 사업을 시작한 해의

④·⑤ (생 략)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 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 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 의 25의 범위로 한다.

③ (생략)

여) ①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u>사람을 포함한다)</u> · 자녀 · 부모 ·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 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1월 1일 부터 폐업한 해의 12 월 31일까지의 기간

- 4.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 해당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에 해당하는 기간
- ④·⑤ (현행과 같음)

원) ① (현행과 같음)

(2)
<u>100</u> 분의
2.2

- 50 이상으로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 여) ① -----

>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등 혼인의 실질을 가진 합의에 따른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

### ②・③ (생 략)

-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 경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되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생략)
  -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 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다. (생 략)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
격의 제한)
1. (현행과 같음)
2
<u>&lt;</u> 삭 제>

나.・다.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소득지원급여) ① 제40
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이 정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신 설>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43조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 된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상당액까지 소득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40조제1항제1호, 제1호의 2, 제5호, 제6호 및 제2항의 이 직일은 소득감소기준일로 본다. ③ 소득지원급여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9조의3(이직준비급여) ① 피보 혐기간이 6년 이상인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혐 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회 9 인일을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이하 "이직준비급 여"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 다. 다만, 이직준비급여를 지급 받은 자는 급여기간 만료 후 피보혐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 야 다시 이직준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신 설>

②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 여 폐업한 경우에는 1일 180일 을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 상당 의 급여(이하 "자영업자 이직 준비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 이직 준비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급 여기간 만료 후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자영 업자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59조의4(청년 이직준비급여) ① 피보험기간이 120일 이상인 18 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 예 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횟수 에 제한 없이 총 600일을 한도 로 하는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 를 받을 수 있다.

② 피보험기간이 12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 자영업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 <u><신</u> 설>

의 기간 동안 자영업 청년 이 직준비급여를 지급한다.

제59조의5(재충전급여) ① 근로 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기간이 8년이지난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8년마다 1회 90일을 한도로 하는 재충전급여를 지급받을 수있다. 농림어업인인 피보험자도또한 같다.

-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재충 전급여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 는 재충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휴직을 피보험자가 청구 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 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충전급여청 구권은 8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한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행사하지 못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재충전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 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이하 "최저재충전급여일액"이라 한 다)
- 3. 농림어업인의 경우에는 그 기초일액의 100분의 90에 해 당하는 금액
-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재충전급여일액이 최저재충전 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재충전급여일액을 그 수급 자격자의 재충전급여일액으로 한다.
- ⑥ 피보험자가 제1항의 재충전 급여를 지급받는 중에 최저임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보 수를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 업을 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단한다.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제69조의2(<u>자영업자 등</u>인 피보험

의 실업급여의 종류) <u>자영업자</u> 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 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 한다.

<u><신 설></u>

<신 설>

<신 설>

-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1. 폐업일 이전 <u>24개월간</u>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

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u>자영업</u>
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
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u>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제37
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3항 각 호
2. 농림어업인인 피보험자: 제3
7조제2항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각 호
3.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
종사하는 사업이 농림어업인
경우에는 제2호에, 그 밖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148개월간

- 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u>취업을 하지</u> <u>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단서</u> 신설>

3. • 4. (생략)

1. • 2. (생략)

1. • 2. (생략)

- ② (생략)
-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 하는 등 고용노동부렁으로 정 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 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단서 신설>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미마 메츠에 드이 그거쉬
<u>다만, 매출액 등이 급격하</u>
게 감소한 경우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단서 신설>

<신 설>

-. <u>다만</u>, 피보험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남 년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육아휴 직을 신청하였으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 으로 본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이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 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르 교하하다)르 야유차기 의차

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

\_\_\_\_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 1. 근로자인 피보험자: 육아휴 직 시작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 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 직 종료일까지는 100분에 50 에 해당하는 금액
- 2.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 업자인 피보험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⑤ (생략)

-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 한 등) ① (생 략)
  -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u>제70조제3항</u>에 따른 취업 을 한 경우에는 <u>그 취업한 기</u> 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 ④ (생 략)

-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 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 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 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 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								
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70조제4항</u>								
그 취업으로								
얻은 소득이 최저임금의 100분								
의 60 이상인 기간								
<u>.</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제70조제4항</u>								
<u>.</u>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 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 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

<u>120일</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
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였던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제77조의8제1항제1호
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u>제1항</u>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생 략)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 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④ 제1항 또는 제2항
<u>생</u> 제1성 또는 제2성
, (주) 게 제 4취 게 기 ()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①
1

합산하여 <u>180일</u>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u>12</u>	<u>0일</u>			
2.	<u> </u>	]를	시작	-한	날	이후	1개
	월부1	<u> 터</u>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유산·사산한 경우 및 배우자가 출산하여 일시 휴업 하는 경우에 휴업이 끝난 날 이전에 각 제69조의3제1호, 제7 7조의3제1항제1호, 제77조의8제 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하되,한 번에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한다)로 한정한다.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u>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u>

급여등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1
<u>&lt;단서 삭제&gt;</u>
2
۷.
<단서
<u>삭제&gt;</u>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 ②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 업자인 피보험자의 출산휴가급 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하여 기초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1. 출산전후 90일(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유산·사산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기간
- 2. 배우자 출산 시 최초 10일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76조의3(가족돌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 등 혼인의 실질을 가진 합의에 따른 밀접한 정서적・생활공동체적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3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

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 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인 피보험자 중 가족돌봄휴직 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하여 12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 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가족돌봄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 다 음날부터 1년 동안 가족돌봄휴 직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가 족돌봄을 위하여 연간 90일의 범위에서 노무제공 또는 사업 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휴직 시 작일 이전에 각 제69조의3제1 호, 제77조의3제1항제1호, 제77 조의8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

위기간을 충족한 때에는 가족 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피보험자가 제3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급여액은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액에 준한다.

⑥ 가족돌봄휴직 급여의 신청

<신 설>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제76조의4(가족돌봄휴가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가 족돌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 산하여 120일 이상인 경우 가 족돌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가 제1항의 기간 동안 가족 돌봄을 위하여 연간 10일(감염 병 확산 및 대규모 재난의 경 우에는 10일, 한부모 가족의 경 우에는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내로 노무제공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각 제69조의3제1호, 제77조의3제1항제1호, 제77조의 8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 간을 충족한 때에는 가족돌봄 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 본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 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가 급여는 「남 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 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한다)에 해당하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는 금액으로 한다.

제76조의5(가족돌봄 등을 위한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이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 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 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 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 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 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 간이 합산하여 12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 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 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였던 사람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 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제77조 의8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 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 람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 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가족돌봄 등을 위 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 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 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 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6(준용) ① 가족돌봄휴직 급여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 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 여"는 "가족돌봄휴직 급여"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 직"은 각각 "가족돌봄휴직"으 로 본다.

② 가족돌봄휴가 급여의 반환

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 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제73조 및 제75조의2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 여"는 "가족돌봄휴가 급여"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 직"은 각각 "가족돌봄휴가"로, 제75조의2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가족돌봄휴가 급 여"로 본다.

③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 간 단축 급여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 직급여"는 "가족돌봄 등을 위 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제7 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 은 각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에 대한 적용) 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 업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문화ㆍ 예술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제77조의2(예술인등인 피보험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 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 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

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예술인</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 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예술 인등"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 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 을 적용한다.

-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2.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 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②예술인
<u> </u>
1. <u>70세</u> <u>문화</u>
예술용역 등 계약
<u>70세</u>
<u>70세</u>
문화예
<u> 술용역 등 계약</u>

- 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한다)은 제외한다.
- 3. (생략)
-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등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u>\ \                                  </u>
3. (현행과 같음)
③
<u>예술인등</u>
1.•2. (현행과 같음)
_
4
사업주 등과 예술인등
·.

- ⑤ (생략)
- ⑥ 제1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사업주(제3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보험료를 부담하며,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및 변경,보험료의 산정·납부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업에 따른다.
-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 1. · 2. (생략)
  -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 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

⑤ (현행과 같음)
⑥예술인등과 문화예술
<u>용역 등 계약</u>
제77조의3( <u>예술인등</u> 인 피보험자
에 대한 구직급여) ① <u>예술인</u> 등
 단기예술인등(예술인등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
<u>인 사람을 말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 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5. (생략)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생략)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 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u>ब</u> ो
술인등
4
예술인등
5. (현행과 같음)
6
가. (현행과 같음)
나
1.
단기예술
<u> </u>

-	<u>예술인</u> .	으로 🤄	종사하	였을	것
2 7	ll항제]	[호에	따른	피보	험.
단위기	기간은	그 2	수급자	격과	관
련된	이직	당시의	의 사임	널에서	의
피보학	험자격	취득역	일부터	이직	일
까지의	의 기간	-으로	산정하	하고,	이
직일	이전 2	4개월	동안	근로	자,
예술역	<u>인</u> , 제7	7조의(	5제1항	에 따	·른
노무기	제공자	중 둘	이상	에 해	당
하는	사람으	로로 중	종사한	경우	의
피보학	험 단위	기간	은 대통	틍렁령	<u>0</u>
로 정	하는 ㅂ	마에 u	다른다.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 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 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 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 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 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

인능
<u> </u>
- <u>예술인등</u>
③ <u>예술인등</u>
<u>व</u>
<u>술인등의</u>
<u>ब</u>
<u>술인등의</u>

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
   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생 략)
-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대기기간으로보아 구직급여를지급하지 아니하며, 각호의 사유 중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대기기간이 가장 긴기간을 대기기간으로보다.
-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 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 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

(4) <u>예술인능</u>
⑤ (현행과 같음)
⑥ 예술인등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한다.
-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 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 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 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 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 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 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⑦ 예술인등
<u>단기예술인등</u>
⑧
<u> </u>
<u>&lt;</u> 삭 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 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 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 로 정한다.

제77조의5(준용) ① <u>예술인</u>의 피 저 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 1항, 제14조제1항, <u>제15조</u>, 제17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 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으로 본다.

제77조의5(준용) ① <u>예술인등</u>
<u>제15조(제</u>
8항에 따른 신고의무업종에 한
한다)
<u>"예술인등</u> -
<u>무</u>
화예술용역 등 계약 개시일
화예술용역 등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등

-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 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 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 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 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 제6 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 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 다.
-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 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 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 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 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직 급 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② <u>예술인등</u>
<u>.</u>
<u>&lt;삭 제&gt;</u>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④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구직급여 · 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 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장 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 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 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 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 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 는 각각 "구직급여"로, "사업 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 각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 자"는 각각 "예술인"으로, "육 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 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 의2"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

<삭 제>

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제5장의2에 따른 출산전후 급여등"으로, "실업급여·육아 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출산전 후급여등"으로 본다.

<신 설>

⑤ 예술인등과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예 술인등과 문화예술용역 등 계 약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 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이하 "예술등플랫폼"이라 한 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 (이하 "예술등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예술등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예술등플랫폼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는 경우 예술인등의 피보험자 격의 취득, 자료제공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77조의7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는 "예술인등"으로, "노무제공플랫 폼"은 "예술등플랫폼"으로, "노 무제공플랫폼사업자"은 "예술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따라이 장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 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

등플랫폼사업자"로 본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②
1. <u>70세</u>
<u></u> 문화예술용역
<u>등 계약-70세</u>
<u>70세</u> -

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u>문화</u>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3. (생략)

③ • ④ (생 략)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 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

문화	예술용
역 등 계약	
<삭 제>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이직 당시 <u>단기노무제공자</u>였던사람만 해당한다.

### 1. ~ 6.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 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 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 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 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단기노무제공자(노
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 6. (현행과 같음)
2)
<u>예술인등</u>

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 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 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 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 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 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 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 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 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④·⑤ (생 략)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

,
③
노무제공자의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 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 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

⑦・⑧ (생 략)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
 < < 삭 제>

 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

 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
 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
 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
 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⑦·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 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 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제77조의10(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 3조제1항, 제14조제1항, <u>제15조</u>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 ② (생략)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제77조의10(준용) ①
제15조
(제8항에 따른 신고의무업종에
한한다)
<u>.</u>
(2) (현행과 같음)

<삭 제>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 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 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 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 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 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④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 인 • 구직급여 • 출산전후급여등 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 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 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 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 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 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 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 는 각각 "구직급여"로, "사업 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

<삭 제>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 각 <u>"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u>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 자"는 각각 "노무제공자"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 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 장의3"으로, "제5장에 따른 육 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 여등"은 "제5장의3에 따른 출 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 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 야 하다.

- 1. ~ 2의2. (생 략)
-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 4. ~ 7. (생략)
- ②·③ (생 략)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 1. ~ 2의2. (현행과 같음)
- 3.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 가 급여등, 가족돌봄휴직 급 여 등의 지급
- 4. ~ 7.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 [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 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제87 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하 대한 심장이하지 급여당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등과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처분
<u>.</u>
②·③ (현행과 같음)
세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출산전후휴가 급
여등 및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
<u>에 관한 처분</u>

한다.

## ② (생 략)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u>근로자가</u>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u>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이익한 처우</u>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1. ~ 3. (생략)
-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u>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u>을 반환받을 권리

## ② (생략)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u>육아</u>

(2) (현행과 같음)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 그 밖의 불이 익한 처우
제공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 그 밖의 불이         익한 처우            제107조(소멸시효) 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 그 밖의 불이         익한 처우         제107조(소멸시효) 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 그 밖의 불이         익한 처우            제107조(소멸시효) ①
또는 갱신 거절 그 밖의 불이 익한 처우  제107조(소멸시효) ①
<u>익한 처우</u>  제107조(소멸시효) ① 
 제107조(소멸시효) ① 
제107조(소멸시효) ①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시간 단축 급
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제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_
가족돌봄휴가 급여 등	-
	-
	-
<u>.</u>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벌칙) ①	-
	_
	-
	-
	-
1.·2. (현행과 같음) -	
3	-
<u>육아기</u> 근로시간 단축 급	-
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가 급여 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띠	-
른 구직급여	
②	-
	-
	-
<u>.</u>	
<ol> <li>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지</li> </ol>	-

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 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 주

- 2. (생략)
-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 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 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 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 니한 자

	에	대한	해고,	예	술인등	<u>=</u>	<u>및</u>
	노무	-제공/	사에 디	배한	계약	해.	지
	<u>또는</u>	: 갱신	거절	ユ	밖에	근.	로
	<u>자,</u>	예술역	인등 말	및 <u>!</u>	노무저	]공	<u>가</u>
			]익한				
	업주	<del>-</del>					
2.	 (현	- .행과	같음)				
भी 1 1	[8조	(과태.	료) ①				
			- <u>.</u>				
1.	~	3. (현	년 행과	같음	-)		
4.	제]	108조기	제1항이	]			

-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 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 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 주지 아니한 자
-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 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 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8.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 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 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 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

5. <u>제108소제2항에</u>
C -1)100 고 1)1 전에
6. <u>제109조제1항에</u>
7. · 8. (현행과 같음)
②
1. <u>제108조제3항에</u>
1. <u>4 1003_4 3 % 4 </u>

2. <u>제109조제1항에</u>
③ <u>제87조에</u>
<u>.</u>
④ (현행과 같음)